

2026. 6.

독일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보호 및 침해 판단 기준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연구원 박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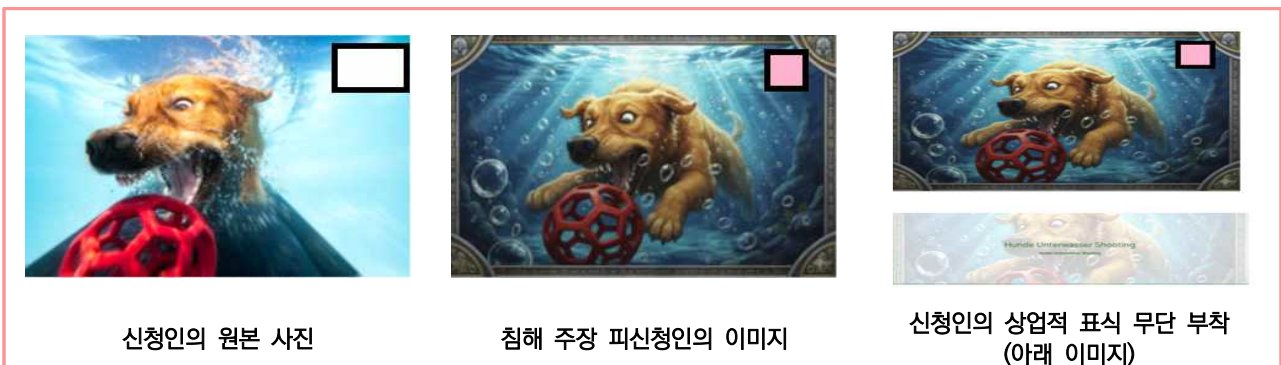
1. 개요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타인의 저작물을 AI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거나, 특정 저작물을 참조 이미지로 입력하여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위에 대하여 법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가처분 판결¹⁾에서 AI 산출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기존 저작물을 활용해 생성된 AI 이미지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²⁾ 특히 사진 저작물에서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모티프(Motif)’를 엄격히 구분한 점이 핵심이다.

2. 주요내용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동물 전문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진작가이다. 신청인은 수중에서 빨간 장난감을 향해 입을 벌리고 뛰어드는 개를 근거리에서 포착한 사진(이하 ‘원본 사진’)(아래 이미지 참조)을 촬영 후 보정하여 상업적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원본 사진은 개의 머리와 장난감만 화면 가득 채우고, 촬영 시 선택한 원근법과 아웃포커싱(Unschärfe) 기법으로 인해 개의 몸통이 배경 속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역동적이고 사실적인 수중 사진이다.



피신청인은 과거 신청인과 협력 관계에 있었던 자로, 관계 종료의 경위는 다툼이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원본 사진 파일을 AI 소프트웨어 X에 업로드한 후, AI로 하여금 새로운 이미지(이하 ‘침해 주장 이미지’)(위의 이미지 참조)를 생성하게 하였다. 생성된 이미지는 개의 전신과 앞발이 모두 보이는 만화풍 그림체의 수중 장면

1)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2026.4.2. 선고 1 - 20 W 2/25 판결
 2) OLG Düsseldorf, Urteilvom 02.04.2026, I-20 W 2/26.

으로, 원본 사진과는 화풍·구도·원근법, 조명, 선명함과 흐릿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피신청인은 이 이미지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신청인은 2025년 10월 15일 이를 발견하였다. 피신청인은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어떠한 프롬프트를 사용하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신청인은 침해 경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응하지 않자,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1심인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두 이미지의 전체적인 인상이 현저히 다르고 공통점은 보호받지 못하는 모티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³⁾ 신청인은 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두 이미지는 외관상 거의 동일하므로 독일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의 자유로운 개작(freie Bearbeitung)⁴⁾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모티프와 주제의 공통점도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AI를 이용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경우에는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1심 판단에 동의하며 항고를 기각할 것을 구하였다. AI 생성 이미지는 원본 저작물의 자유로운 개작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3)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AI 생성 이미지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의 자유로운 개작이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AI 생성 이미지가 원본 사진저작물의 창작적 요소를 차용하여 저작권법 제97조 제1항의 저작권 침해(즉 복제)를 구성하는지 여부이다. 셋째, 저작권 침해가 부정되더라도 저작권법 제72조에 따른 사진(저작인접권)의 침해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2025년 12월 4일 선고된 유럽사법재판소의 ‘Mio und konektra’ 판결⁵⁾을 판단의 주요 준거로 삼았다.

4) 법원의 판단

(1)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부정 – 자유로운 개작 불성립

법원은 먼저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의 자유로운 개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과물 자체가 독자적인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의 AI 산출물은 원칙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⁶⁾에 따라 저작물 개념의 두 요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상이 창작자

3) LG Düsseldorf, Beschluss vom 22.12.2025 – 12 O 282/25.

4) 새로 작성된 저작물이 원본 저작물과 충분한 거리를 두는 경우 자유로운 개작에 해당되어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됨(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2문).

5) CJEU, Judgement on 4 December 2025, in Joined Cases, C-580/23 and C-795/23, para.72.

의 자유로운 창조적 결정을 반영하는 독창적인 정신적 창작물이어야 하고, 둘째, 그러한 창작을 표현하는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술적 제약이나 규칙, 또는 예술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다른 제약에 의해 창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AI 산출물에 적용하면, 저작물성 인정 여부는 소프트웨어 구동 과정에서도 인간의 창조적 영향력이 행사되었는지에 달려 있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 프롬프팅 과정에서 결과물에 개성을 부여할 만큼 충분히 개별화된 창조적 결정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둘째, 단순히 AI의 여러 제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 완전히 소프트웨어 주도로 생성된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 및 저작인접권 보호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넷째, 입증책임은 저작물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점이다.⁷⁾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법원의 명시적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떠한 창조적 결정을 내렸는지 전혀 소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AI 생성 이미지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의 자유로운 개작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진저작물의 복제 해당 여부 - 저작권 침해 부정

하지만 저작물성이 부정되더라도, 원본 사진저작물의 창작적 요소를 차용한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Mio und konektra 판결⁸⁾에 따라 다음의 2단계 심사를 적용하였다. 첫째, 보호되는 저작물의 창작적 요소가 무단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 확인과 둘째, 그 요소들이 침해 주장 대상물에서 식별이 가능하게 차용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법원은 사진저작물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는 구도(Bildausschnitt), 원근법(Perspektive), 조명설정(Beleuchtung), 조리개 및 노출 시간의 조합에 의한 선명도(Schärfe) 및 흐릿함(Unschärfe)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주제(Thema)와 모티프(Motiv)는 보호 범위에서 제외했다. 주제는 구체적인 저작물이 보호 대상이지 추상적 아이디어가 아니고, 모티프는 사진가의 창조적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를 본 사안의 원본 사진에 적용하면, 보호되는 창작적 특성은 근접 시점에서 개의 두부와 장난감만 프레임에 채우면서 몸통을 아웃포커싱으로 배경에서 흐리게 하여 역동적이고 사실적인 분위기를 창출한 것이다. 반면 AI 생성 이미지는 만화풍 화풍에 개의 전신과 앞발이 모두 보이며, 원본 사진의 조리개 및 노출에서 비롯된 역동적 표현이 전혀 없다. 신청인이 주장한 유사점은 모두 ‘수중에서 빨간 장난감을 향하는 개’라는 모티프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저작권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공공 영역의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제권 침해는 성립하

6) CJEU, Judgement on 12.9.2019, Case C-683/17, Cofemel, para.29 -31; CJEU, Judgement on 4 December 2025, in Joined Cases, C-580/23 and C-795/23, Mio und konektra, para.85-87.

7) 최근 판례 참조: AG München Endurteil vom 13.02.2026, 142 C 9786/25; LG Frankfurt am Main, Urteil vom 17.12.2025, 2-06 O 401/25.

8) CJEU, Judgement on 4 December 2025, in Joined Cases, C-580/23 and C-795/23, Mio und konektra, para.85-87.

지 않는다.

또한 법원은 전체적 인상의 비교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론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기준은 디자인 보호에 관한 것이고 저작권 침해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⁹⁾

(3) 저작인접권 침해 부정

법원은 저작물 수준에 이르지 않는 단순 사진(Lichtbild)의 저작인접권(저작권법 제72조) 침해 여부도 검토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침해를 부정하였다. 저작인접권도 구체적인 사진 결과물에 대한 보호이고, 침해 성립을 위해서는 사진가의 급부 그 자체의 차용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피신청인의 AI 생성 이미지는 모티프만 공유할 뿐, 신청인의 촬영 행위로 구현된 급부 자체는 차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 기타 - 표식 무단 부착 문제

피신청인이 AI 생성 이미지에 신청인의 상업적 표식을 무단으로 부착한 행위는 별개의 소송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1심에서 이를 청구원인으로 삼지 않았고, 항고심 단계에서는 가처분의 긴급성도 결여되어 있어서 이 사건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3. 평가 및 전망

이 판결은 디지털 이미지 편집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판결은 AI 이미지 생성 기술과 저작권법의 교차점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AI 산출물의 저작물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저작물성 인정 여부는 프롬프팅 과정에서의 인간의 창조적 기여에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저작물성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이는 기존 유럽사법재판소 판례의 기준을 AI 맥락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인간과 AI 협업 창작물'의 보호 기준과 맥을 같이 한다.

둘째, 사진저작물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화면구도, 원근법, 조명, 초점, 선명도와 흐릿함 등의 표현은 보호될 수 있지만, 주제와 모티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원칙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 판결은 AI 생성 이미지에 의한 사진저작물 침해 여부 판단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하며,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AI 맥락에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다.

셋째,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자유로운 개작(freie Bearbeitung) 법리와 AI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본 판결은 AI 산출물 자체가 인간의 창의성이 결여되어 저작물이 아닌 이상 새로운 저작물을 전제로 하는 자유로운 개작의 항변은 애초에 성립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여부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AI 산출

9) CJEU, Judgement on 4 December 2025, in Joined Cases, C-580/23 and C-795/23, para.87.

물이 원저작물의 보호되는 창작 요소를 차용하였는지 여부로 귀결된다. 이는 원저작물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 없이 AI 결과물을 공개하였더라도, 원저작물의 창작적 요소가 전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판결이 제시한 기준들은 실무적으로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어느 정도의 프롬프팅이 충분한 창조적 결정에 해당하는지의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법원은 충분히 개별화된 사전 설정이나 결과물에 개성을 부여하는 선별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임계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향후 복잡한 다단계 프롬프팅이나 AI와 인간의 반복적 협업으로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또한 본 판결은 저작권법 제13조의 성명표시권 침해 문제를 다루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표식을 무단으로 부착한 행위에 대해서도 가처분의 긴급성 부재를 이유로 실체적 판단을 회피하였다.

앞으로 AI 도구를 활용하는 창작자 및 기업들은 법적 리스크 관리와 권리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을 주장하려면 기계적 생성을 넘어선 인간의 창조적 개입을 철저히 소명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이는 프롬프팅 과정(구체적인 명령어, 사전 설정, 반복 및 수정 작업, 여러 결과물 중 최종안을 선택한 과정 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문서화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입증 자료 없이는 사실상 저작권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

둘째, 타인의 저작물을 참조 이미지 등으로 AI에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공개하는 행위는, 결과물에서 원저작물의 보호되는 창작적 요소(구도·원근법·선명도 등)가 식별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다. 결과물이 원작 고유의 개인적인 창작의 흔적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여야만 법적 한계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AI 생성 이미지에 타인의 상업적 표식이나 워터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위험(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수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진작가들에게 이 판결은 보호받는 예술적 성과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모티프 사이의 뚜렷한 경계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는 사진작가들에게 자신의 작품이 AI 학습이나 참조 이미지로 쓰이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계적 촬영이 아닌 작가만의 독창적인 기법과 연출이 포함된 '표현 방식'의 중요성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

참고자료

- OLG Düsseldorf, Urteil vom 02.04.2026 – I-20 W 2/26 (https://nrwe.justiz.nrw.de/olgs/duesseldorf/j2026/20_W_2_26_Urteil_20260402.html)
- Solmecke, KI-Umgestaltung von Fotos verletzt Urheberrecht nicht (<https://www.wbs.legal/medienrecht/olg-duesseldorf-beschliesst-ki-umgestaltung-von-fotos-verletzt-urheberrecht-nicht-86460/>)
- Beyer, OLG Düsseldorf: Keine Urheberrechtsverletzung durch KI-generiertes Bild (<https://www.beyer.law/2026/04/20/olg-duesseldorf-keine-urheberrechtsverletzung-durch-ki-generiertes-bild/>).